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에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 조달청, 시설공사 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 [1] 담합·덤핑입찰에 대한 기본적 시각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 가) 담합입찰에 대한 기본적 시각

##### (1) 법령상의 규정

예산회계법, 건설업법, 형법, 공정거래법에 공통적으로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정한 경쟁의 집행방해 또는 공정한 가격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연합한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찰가격을 예가 이상으로 조작하거나 금전수수의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2) 업계의 주장

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우로 담합의 해석을 희망하고 있다.

##### (3) 조달청의 견해

현재와 같은 담합의 형태는 1군 등 대형건설업체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시장 개방시 외국건설업체가 대거 참여하게 될 경우 같은 형태로 담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나 담합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담합 행위제재와 예방차원에서 근원적 제도개선 및 입찰질서 확립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담합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하면 업계에서 희망하는 일본의 경우와 같은 담합의 해석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4개 법령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담합판정 및 처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어 담합판정에 대한 청구일원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발주 전기공사 입찰에서 사전담합을 통한 공사수주혐의로 기소된 (주)성창전업 권영달 대표에게 「공사의 응찰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공사를 단독으로 낙찰받았다면 낙찰자의 행위는 발주자측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 나) 덤핑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 (1) 법상 덤핑개념

자사의 공사실적 및 기술능력과 재무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가로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법상 적용기준

재무부의 PQ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Q심사 기준에는 예정가격의 60% 미만으로, 예산회계법령 제86조(공사의 현장실명과 입찰)에는 50% 미만으로, 동법 제123조(차액보증금)에는 70% 미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7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입찰제 하에서 덤핑입찰이 다발하는 이유는 공사실적 축적을 위한 무리한 덤핑입찰과 건설업체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건설시장의 상대적 협소 등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저가하도급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덤핑입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여 덤핑행위가 근절되도록 입찰 및 하도급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 제도개선 기본방향

내적으로는 건설업체의 대폭적인 증가로 건설시장은 과당경쟁 및 이에따른 부실시공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건설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배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여건에서 제도측면에서는 기술력에 의한 저가투찰이 아닌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등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책과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성 부여(최저가낙찰제)라는 상반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양면성은 덤핑과 담합이라는 부정적 양면성으로 변질되어 고질적인 병폐로 뿌리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97년 1월 건설시장이 개방되고 개방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기본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최저가낙찰제의 기본틀속에서 담합과 덤핑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방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입찰질서 확립 및 담합방지 대책

### 가) 제한군 운용 확대

종전에는 1-5군은 해당군내에서 60개사씩 순차회전하고, 6-10군은 전업체를 지명했으나 지난 11월 12일자 계약요청서 접수분부터는 군별 구분이 없이 업체지명을 해당군 전업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성이 확대되어 담합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 나) 상시투찰제 운영개선

#### (1) 도입취지 및 운영결과

상시투찰제는 지난 9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93년 1월부터는 총액입찰에 대해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업체의 편의를 위해 입찰 5일전부터 상시투찰함에 입찰서를 투합할 수 있다.

93년 실적에 의하면 87.7%가 상시입찰로 집행되었고, 상시투찰자가 80.8%가 낙찰된 것을 볼 때 입찰참가업체와 발주기관 모두에게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막대한 절감효과

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를 입찰서 대리작성 또는 입찰서 대리투합 등 업체간의 담합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운용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2) 개선방향

담합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사입찰에는 상시투찰제를 폐지하고 그 외의 공사에는 그대로 운영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개선한다.

제한군 대상공사는 입찰참가 대상이 1백여 개가 되므로 담합근절 상태를 보아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PQ대상공사와 실적제한공사 등 입찰참가대상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는 1차적으로 제외하며, 상시투찰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편입찰도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장에서 입찰참가업체의 등록된 임원이 지정된 좌석에서 입찰서에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서는 입찰집행관이 당일 입찰장에서 날인 등의 표시기재후 배부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며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나) 내역입찰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내역입찰제는 건설업계의 견적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현장설명서 배부된 세부공종별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역입찰제는 당초 도입취지를 크게 벗어나 대리작성 또는 작성된 내역서의 무제한 수정 등 담합에 악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개선방향

내역서 총괄금액이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어 수정한 내역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3회 이상 무효 처리된 업체는 PQ심사에서

3개월간 배제된다.

다) 담합고발창구 운영 및 자동제소제도 실시

조달청 민원상담실에서 담합고발창구 및 고발함을 설치해 운영해 고발자의 신원 및 내용 등 기본적 내용만 조사해 신원이 확인된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자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고발자의 보호차원에서 신원노출을 철저히 방지한다.

무기명투서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령에 의거, 제소에서 제외하며 입찰감시활동 강화로 담합예방 조치한다.

라) 입찰질서 상시감찰반 운영

(1) 내용

조달청 자체입찰질서 감시반을 편성하여 입찰실 주변과 청사부근 담합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2) 편성

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타국직원과 청경 등 입찰과 관련이 없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3) 결과조치

자체 감사결과와 즉시 지휘보고 및 해당국에 통보하고 해당국에서는 자동제소장치를 이용한다.

마) 업체에 대한 담합방지제도 실시

(1) 내용

담합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1-2군 업체에 대해 담합방지를 위한 조달청 제도개선 내용을 주지시키고 건설협회와 업체에 주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한다.

(2) 방법

우선 건설협회와 대형건설업체에 「항응제공 등 담합행위를 빙자한 가격협정」의 담합행위와 「부실공사방지 명목 등」으로 담합을 획책하는 모임 등은 근절하도록 경고 공문 발송 및 자체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매

분기별로 업체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바) 입찰참가신청 절차 개선**

(1) 개선요망부분

낙찰자의 계약체결 이행 확보를 위해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금 면제자에 대한 지급각서는 연간 낙찰된 후 계약불이행 건수는 1-2건에 불과 하는 등 그 실효성이 극히 미약하므로 업체와 발주기관에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만 초래하게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노출로 담합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2) 개선방향

연1회 최초 입찰참가시 공중에 의한 지급각서로 연간 입찰참가보증금으로 같음하고 현재 입찰일 1일전까지 지급각서 제출로 입찰참가신청서를 대신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당일 입찰참가로 같음한다.

이 제도 시행전까지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FAX로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게 임시조치를 취한다.

**[3] 최저가낙찰제 보완 및 덤핑방지 대책**

**가) 최저가격낙찰제 실시**

(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는 ①입찰공고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②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요공사에 대한 부실 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 시행령에 세부 집행절차와 집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집행절차

① 1차적으로 PQ심사(입찰참가자격 부여)

② 입찰실시

③ 저가입찰 순으로 3-5개사를 선정

④ 사후 PQ심사를 통해 종합평가

⑤ 가격에 대해서 시담가능

⑥ 공사보험 의무화

⑦ 은행지급보증제 도입

※ ④ 사후 PQ 때는 가격요소가 70-85%를 차지하는 사후평가 고려요소는 (사전 PQ심사시의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성적)(공사여율율-장비-기술자-시공중 공사)(시공평가성적, 재해율, 부실벌점, 우수시공 상황)(기술투자계획과 시공계획 등 요소를 계량하여 평가)한다.

(3) 적용대상

다중 이용시설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이 특별히 중시되는 3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시향성과에 따라 현재 14개 PQ공종중 지하철, 터널, 교량, 가스관련공사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 최저가격 조정낙찰제 또는 최저가군 평균 가격 낙찰제**

(1) 최저가격 조정낙찰제

이 제도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최저입찰자가 예가의 75-90% 수준인 정상수준가격인 경우 그대로 낙찰자로 결정하지만 입찰결과가 정상가격수준 이외의 담합 또는 덤핑우려 대상입찰일 때에는 ① 90% 이상인 경우에는 저가입찰순 3-5개사를 대상으로 추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되 낙찰가격은 최저응찰자 수준으로 하고 ② 75%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입찰순 3-5개사를 대상으로 추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되 낙찰가격은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며 ③ 60% 이하 응찰업체는 무효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0% 이하 입찰이 3회 이상인 업체는 3개월간 당해공종 입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다.

(2) 최저가군 평균가격 낙찰제

현재와 같이 최저가입찰을 실시하여 저가입찰 순으로 3-5개사를 최저가군으로 선정한 뒤 저가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가격 직상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이 제도 역시 60% 이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다) 저가낙찰이 빈번한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1) 현황**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집행 실적 7건의 평균낙찰율(예산대비)이 47.8%로 원천적인 부실 우려가 있고 외국업체에 경쟁적인 로얄티 지급으로 외화 낭비가 큰 실정이다.

입찰대상업체를 보면 시공실적을 보유했거나 시공중인 업체가 7개사, 외국업체와 장기기술제휴 11개사(시공실적 7개사 포함), 단기기술제휴 10개사 정도(Case by Case로 입찰참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21개사 정도가 향후 쓰레기처리장의 건설시장규모를 겨냥하여 극심한 경쟁으로 덤핑입찰하고 있다.

**(2) 개선방향**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덤핑을 방지하는데, 즉 단기기술협력업체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소각업체와 장기기술제휴하여 환경처에 기술도입신고를 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 공사금액 적정화**

**가) 부대입찰제의 하도급 적정보장 제도화**

현재 부대입찰시 하도급낙찰률 제한이 없어 입찰가격의 77%(예정가격의 68%)으로 하도급, 원천적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대입찰대상공사로서 부대입찰부분(최소한 공사금액의 30% 이상)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기준가격(공사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법제화하며, 이에 따라 주계약자가 덤핑을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는 정상가격이 보장되며 결과적으로 덤핑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나) 하도급직불제 제도화**

현재 하도급직불제는 원도급자 부도파산의 경우와 상호협의를 경우만 직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직불제가 유명무실한 실정 이므로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다) 우수시공을 위한 공사원가 현실화**

비현실적 자재단가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중 중요한 사용자재에 대한 세부규격 및 명칭을 기재한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시장개방시에는 크레임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공사노임은 재무부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책정하여 1년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적정노임산정을 위해 앞으로는 통계청 지정기관인 건설협회조사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에 인정된 경비(23개 항목)에 대해 현재 설계시에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않는 법정 팔요경비는 전항목을 원가계산에 반영한다.

시공업체가 계약금액 이외에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기공식·조감도·상황실·준공식 비용 등 과외경비도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라) 입찰전 입찰참가 시공업체에 청문기회 부여**

현장설명실시후 입찰전 일정기간동안 설계 및 시방서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질의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한다. 즉 ① 공기에 대한 의견 ② 설계내용중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의견 ③ 과외비용 등 비용산정이 불명확한 사항 ④ 하도급, 부대입찰, 공동도급 등 주요 공고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게 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발주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을 통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도모한다.

이 제도는 우선 1차적으로 PQ대상공사에 적용하고 95년 하반기부터 의무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인 3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 [5] 공사보증제도

### 가) 은행 지급보증제도 도입

#### (1) 은행지급 보증제도

은행지급 보증제도는 은행이 계약자(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여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시 부조건적, 취소불능적으로 손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즉시 지급, 보증채무의 독립성, 절대적 보증(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 청구에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보증형태는 은행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비용측면을 보면 계약보증금의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가 0.5-1.5%로 건설공제조합의 0.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2) 개선방향

95년에는 턴키, 대안공사에 적용하고 96년에는 PQ공사에 우선 적용하며 건설시장 개방 전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은행지급보증금의 내용을 보면 ①계약보증금은 보증대상금액이 계약금액의 6-20% 이상이며 ②하자보수보증금은 2-10% 이상 ③선금보증금은 20-70% 범위로 하게 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덤핑을 규제하기 위하여 85% 미만 낙찰공사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계약보증금은 바로 직접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며 은행보증금제도도 없었는데, 재무부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3) 기대효과

공사이행 유자격자를 선정하며 강력한 계약이행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공사계속 수행이 용이하며 건설시장개방에 산전 대처가 가능하다.

## 나) 공사보험제도 확대실시

### (1) 내용

외국의 경우 건설보험은 공사계약자가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임의로 적용되는 실정이고 산재보험만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2) 적용근거 및 현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5조(손해보험의 가입),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경비) 10항(보험료)에 건설보험 근거를 두고 있다.

올4월부터 1차적으로 턴키공사에 대해 적용한 결과 성남폐기물처리시설공사 등 8건에 적용되었으며,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건설보험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보험요율, 보험부보자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6] PQ심사기준 등의 강화

### 가) PQ기준강화 및 확대실시

#### (1) PQ제도 확대실시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규모를 확대하며 주요건축공사 등 대상공종도 늘린다.

#### (2) PQ 적격선정업체수의 단계적 축소

현재 심사점수 60점 이상이 30인 이상인 경우 20-30개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점수 60점 이상이 15인 이상인 경우 15-25개사를 선정한다.

#### (3) PQ심사 면제제도 시행

현재 매건별 전업체를 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업체별과 과거 심사결과를 반영(60건 집행결과), 공종별로 과거 전공사에 적격선정업체 또는 우수업체는 심사면제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사고 및 부실야기업체는 제외한다.

#### (4) 부실시공 방지책으로 제한기준 강화

70% 이하 입찰이 3회 이상인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과 PQ심사를 배제한다.

내역서 총괄금액이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어 수정한 내역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3회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수정하여 무효 처리된 업체는 PQ심사에 3개월간 배제된다.

**나) 턴키제도의 심사기준 강화**

현재는 설계점수만 높으면 입찰가격이 높더라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설계점수가 낮더라도 텀핑입찰의 경우 낙찰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찰가격 반영의 설정(예:70%까지만 가격에 반영)하고 설계점수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의 시공능력평가도 병행하며 설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한다.

**다) 제한군 편성기준 강화**

**(1) 현황**

현행 제한군 제도는 지난 58년에 도입된 도급한도액제도에 근간을 뒀 능력에 맞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정부발주공사의 균등배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도급한도액은 산정방식이 간단해서 업체의 실질적 평가기준이 없던 시대에 업체평가의 유일한 자료였으나 공종의 구분없이 토목 및 건축공사 등 모든 공사실적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아파트나 지하철 등 공종별 시공능력을 나타내기는 부적합하다.

현행 제한군 편성은 이같은 도급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도급한도액은 크나 실제로 실적이 미진하거나 기술자 보유상황 등 기술능력이 일천한 업체가 상위군에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하도급관리 등의 소홀로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개선방향**

도급한도액과 기술자 보유현황 등 기술능력을 감안한 제한군 편성으로 전환하고 기술능력이 일천한 업체는 군편성시 배제하여 공사실적 등에 비해 기술자 보유수가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1-2등급 아래 군으로 편

성하며, 95년초 제한군 편성 조정시 적용, 시행한다.



**[7] 지역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가) 지역공동 도급시 대기업의 계열기업 배제**

**(1) 문제점**

대기업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자사계열사와 공동도급하는 경우가 늘고있고 이와같은 목적으로 위장계열사 난립이 우려된다.

**(2) 개선방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상호간에는 공동도급을 불허한다.

**나) 지역우대입찰제 도입**

**(1)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55억원 이하 공사는 해당지역업체에 대해 10% 내외의 입찰가격을 우대해 평가하며, 시·군·구 지방자치 해당업체는 입찰가격의 10%를,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해당업체는 입찰가격의 5%를 각각 우대해 평가한다.

**(2) 기대효과**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수주 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건설업의 대기업 집중현상을 방지하며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